

발송번호: 9-5-2022-032794409  
발송일자: 2022.05.02.  
제출기일: 2022.07.02.

수신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53번길 16, 204호  
(보수동1가, 세연빌리브)  
이정현 귀하(귀중)

48967

## 특 허 청 의견제출통지서

출원인성명 이정현 (특허고객번호: 420211002448)  
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53번길 16, 204호 (보수동1가, 세연빌리브)  
대리인성명  
주소  
출원번호 40-2022-0000190  
상 품 류 제 41 류

1. 이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은 거절이유가 있어 이를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제출기일까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(관계법령 : 상표법 제54조 및 제55조,

의견서 :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,

보정서 :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)

2. 위 제출기일에 대하여 매회 1월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기간연장승인통지는 하지 않습니다. 기간연장은 2회 이상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, 기간연장신청서는 지정(연장)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.

### 거 절 이 유

이 상표등록출원 상표는 다음 거절이유가 있어 통지합니다.

1. 상표법 제35조 제1항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아래 거절이유의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 상기 제출기일까지 의견(답변, 소명)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: 상표견본이미지

본 출원	인용	인용
4020220000190	4020210241072	4020210241093
		

(※ 본 통지서의 상표견본 이미지는 출원서에 첨부된 상표견본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)

[ 거절이유 ] 상표법 제35조 제1항 (또는 제34조 제1항 제7호)

이 출원상표는 아래와 같이 타인의 선출원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·유사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5조 제1항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또한, 해당 선출원상표가 최종 설정등록되는 경우에는 (상표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)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다만, 타인의 선출원상표가 거절결정, 출원 취하, 출원포기 또는 무효가 확정된 경우에도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
○ 타인의 선출원상표 : 제40-2021-0241072호, 제40-2021-0241093호

- 이 출원상표의 일요부인 'FIET'는 타인의 선출원상표와 호칭이 동일·유사합니다.
- 관련 지정상품 : 전부. 끝.

2022.05.02.

특허청

상표디자인심사국

심사관 김기홍 

1. 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타인의 선출원·선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한 동일·유사 여부는 유사상품 심사기준(특허청 예규)을 참고하여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.
  2. 타인의 선출원·선등록 상표의 상세한 내용은 「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(<http://www.kipris.or.kr/>)」에서 무료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- ※ 위에서 안내한 후속 절차 또는 신청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특허고객상담센터 ☎1544-8080로, 이 통지서 내용에 대한 사항은 특허청 ☎042-481-3582(담당심사관 김기홍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특허로([www.patent.go.kr](http://www.patent.go.kr)) 또는 특허청([www.kipo.go.kr](http://www.kipo.go.kr))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심사 진행상황, 서류 제출 및 절차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 
(특허청)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 4동 (문산동, 정부대전청사)